#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박완주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254

발의연월일: 2020. 6. 8.

발 의 자: 박완주·백혜련·윤준병

민홍철 · 황운하 · 김회재

전재수 · 이규민 · 박성준

이상직 • 문진석 • 양정숙

정춘숙 의원(13인)

#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감사원이 2018년 11월에 대학생 학자금 지원사업 추진실태에 관해 발표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, 2015년~2017년 1학기에 국가장학금 수 혜자격이 있는데도 지원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되는 신입 대학생 은 약 93,082명으로 이중 52.03%에 달하는 48,428명의 신입생이 등록 금 전액 지원대상인 저소득층(기초생활수급자~2분위)에 해당하는 것 으로 나타났음.

뿐만 아니라 감사원 감사기간 중 위에 해당하는 48,428명의 학생에 대하여 수혜자격이 있는데도 국가장학금을 신청하지 않은 사유, 처음 국가장학금 제도를 알게 된 경로, 제도 홍보 강화 필요성 및 방법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, 전체 응답자 1,335명 중 77.2%에 해당하는 1,031명이 국가장학금 제도 자체를 모르거나, 신청 기간 또는 방법을 몰라서 신청하지 못하였다고 답변하는 등 국가장학

금 제도·신청기간·방법 등에 대한 정보부족으로 인해 국가장학금 지원 신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음.

이에 이번 개정안은 기초생활수급자 등 현행 「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」 제49조의4에 따른 우선적 학자금 지원 대상자에 대한 학자금 지원 관련 홍보를 재단의 의무로 명시하고, 보건복지부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 학자금 정보제공에 관한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여 저소득층 학생이 국가장학금 제도를 몰라서 지원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방지하고자 하였음(안 제49조의4 및 제51조제1항제3호 신설).

#### 법률 제 호

##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49조의4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 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② 재단은 제1항에 따른 학자금 지원을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저소득층 학생 등에게 학자금 지원 자격, 신청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.
- ③ 제2항에 따른 정보 제공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 제51조제1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  - 3. 제49조의4제2항에 따른 학자금 정보제공에 관한 업무

## 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 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49조의4(우선적 학자금 지원)	제49조의4(우선적 학자금 지원)
(생 략)	<u>①</u> (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
	<u>수</u> )
<u>&lt;신 설&gt;</u>	② 재단은 제1항에 따른 학자
	금 지원을 하기 위하여 대통령
	령으로 정하는 저소득층 학생
	등에게 학자금 지원 자격, 신청
	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정보
	를 제공하여야 한다.
<u>&lt;신 설&gt;</u>	③ 제2항에 따른 정보 제공에
	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
	<u>정한다.</u>
제51조(업무의 위탁) ① 교육부장	제51조(업무의 위탁) ①
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보	
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	
체의 장에게 위임 또는 위탁할	
수 있다.	
1. • 2. (생 략)	1. • 2. (현행과 같음)
<u>&lt;신 설&gt;</u>	3. 제49조의4제2항에 따른 학자
	금 정보제공에 관한 업무
②・③ (생 략)	②·③ (현행과 같음)